

판례로 본 건설분쟁

자료제공 / 『알기쉬운건설분쟁사례해설집』 건설경제신문사

지체상금 면제사유 여부

쟁점	이례적으로 잦은 강우 혹은 혹한 등의 날씨 관계로 약정준공기한을 넘겼다는 것이 불가항력의 사유인가?
판단	이와 같은 사유는 지체상금의 면제사유인 불가항력이 아니다.

[불가항력의 사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지체상금이 발생하는가? 표준도급계약서나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는 불가항력이나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면제사유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특별히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지체상금의 발생요건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불가항력이나 준공기한을 넘긴 데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언제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약정 준공기한을 넘겼더라도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했다면 지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즉,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국가계약에서는 수급인(=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후문).

그래서 약정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수급인은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항변하곤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로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 천재

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하여 준공이 지연된 것으로 볼 것인가? 흔히 수급인은 잦은 우천으로 인하여 실제 공사할 수 있는 날짜가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거나 철근과 같은 원자재 파동으로 인하여 자재를 수급하지 못해 공사를 못한 경우까지도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체상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흔히 수급인은 이례적으로 비가 내렸다가나 이례적인 폭설과 호한으로 공사가 불가능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동절기의 이상 강우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 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이상 강우라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우므로, 그것을 가지고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언정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③ 그 밖에 피고들의 부당한 시공요구 및 공사 수행의 간섭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들 외에는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다1386 판결) ●

건축설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2010년도 기출문제 정답									
1	2	3	4	5	6	7	8	9	10
나	다	가	다	라	다	가	다	다	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	라	다	다	라	라	나	라	가	다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나	나	다	라	라	다	나	가	라	다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가	가	다	가	나	다	나	나	나	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	가	가	라	가	나	라	가	라	가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	다	다	나	나	가	라	다	라	라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다	가	나	다	라	가	다	다	가	다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나	나	다	나	가	나	나	라	다	라